

의안 번호	1870	【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안】 <b>심 사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일 자 : 2021. 11. 8.(월)
- 나. 발 의 자 : 강혜경의원 외 7명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2. 3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15.(수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제안이유

- 울산큰애기 맛집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추진체계를 명확히 하고 울산큰애기 맛집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사후관리 및 지정 취소 등(안 제6조~제7조)

#### 다. 근거법규

-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
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경희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큰애기 맛집을 선정하여 울산 큰애기 캐릭터 사용권 한 부여, 지정표지판 제공과 위생용품 및 각종 홍보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전통 있는 울산큰애기 맛집을 육성하고, 울산큰애기 맛집의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고 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지역의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

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검토한 바 시행에는 문제점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제정 타당하다고 사료됨.

**4. 심사결과 : 수정가결** ※ 수정안 따로 붙임

### 【수정안】

○ 수정 이유

- 제5조(큰애기 맛집 지원) 큰애기 맛집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함.
- 부칙 제2조(경과조치) 본 조례 시행 시 기존 “울산큰애기 인생 맛집” 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경과조치 추가

○ 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b>제5조(큰애기 맛집 지원)</b></p> <p>1 ~ 4. 생략</p> <p><u>5.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 큰 애기 맛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</u></p> <p><b><u>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><b>제5조(큰애기 맛집 지원)</b></p> <p>1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<b><u>5. 삭제</u></b></p> <p><b><u>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부 칙</b></p> <p><b><u>제1조(시행일)</u></b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<u>제2조(경과조치)</u></b> 이 조례 시행 전 <b><u>에 “울산큰애기 인생 맛집”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“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”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b></p>

# 큰 거 법 규

## 「 식품위생법 」

제89조(식품진흥기금)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8. 3. 13.>

- 1.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
- 2. 제82조, 제83조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7조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
- 3.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. <개정 2010. 3. 26., 2015. 5. 18., 2016. 12. 2.>

- 1. 영업자(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)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
- 2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 사업(소비자단체의 교육·홍보 지원을 포함한다)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·활동 지원
- 3. 식품위생과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 영양관리(이하 “영양관리”라 한다)에 관한 조사·연구 사업
- 4.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
- 4의2.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(이 법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) 상환액의 지원
- 5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
- 6. **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**
- 7. 집단급식소(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)의 급식시설 개수·보수를 위한 용자 사업
- 7의2.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, 영양관리,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

④ 기금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관리·운영하되,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「 식품위생법 시행령 」

**제21조(영업의 종류)**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3. 15., 2011. 3. 30., 2013. 3. 23., 2013. 12. 30., 2016. 1. 22., 2017. 12. 12.>

1. 식품제조·가공업: 식품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
2.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: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·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
3. 식품첨가물제조업
  - 가. 감미료·착색료·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
  - 나.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
  - 다.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·가공하는 영업
  - 라. 기구 및 용기·포장을 살균·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(移行)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·가공하는 영업
4. 식품운반업: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(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)나 어류·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·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영업. 다만,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·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5. 식품소분·판매업
  - 가. 식품소분업: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·판매하는 영업
  - 나. 식품판매업
    - 1) 식용얼음판매업: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
    - 2) 식품자동판매기영업: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. 다만,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  - 3) 유통전문판매업: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·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·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·판매하는 영업
    - 4)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: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
    - 5) 삭제 <2016. 1. 22.>
    - 6) 기타 식품판매업: 1)부터 4)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, 슈퍼마켓,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
6. 식품보존업

가. 식품조사처리업: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(業)으로 하는 영업

나. 식품냉동·냉장업: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. 다만, 수산물의 냉동·냉장은 제외한다.

7. 용기·포장류제조업

가. 용기·포장지제조업: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(용기류는 제외한다)·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

나. 용기류제조업: 식품을 제조·조리·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, 항아리,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

8. 식품접객업

가. 휴게음식점영업: 주로 다류(茶類),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·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,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. 다만, 편의점, 슈퍼마켓, 휴게소,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(만화가게 및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)에서 컵라면,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.

나. 일반음식점영업: 음식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

다. 단란주점영업: 주로 주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

라. 유흥주점영업: 주로 주류를 조리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

마. 위탁급식영업: 집단급식소를 설치·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

바. 제과점영업: 주로 빵, 떡, 과자 등을 제조·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